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공증법령 개정안 활동

1 공증인 정년 관련 공증인법 개정 활동

-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에 따라 2012. 2. 7.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75세 정년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 차원에서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 정년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80세로 적용하여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타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동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는바,
- 동법 개정법률안이 2011. 12.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2. 1. 17.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12. 6. 30.자로 최초 당연퇴직하는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종전 75세에서 80세로 적용되게 되었으며, 출생년도로는 1932. 6. 30. 이전 출생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님 약 74분께서 당연퇴직하시게 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종전 75세로 예정되었던 퇴직 예정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 약 180여 명 중에서 110여 분이 2017년까지는 순차적으로 1년 내지 5년에 해당하는 일부 정년 연장의 혜택이 부여되었으며, 다만 현재 만 70세 회원의 경우부터는 2018년도부터 75세가 적용되므로, 실제 정년 연장 혜택은 없음.
- 한편 동법 개정안은 2010. 7. 정부가 인감증명서제도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는 증서 원본의 열람, 증서 등본의 발급 등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포함되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다음은 협회가 2011. 10. 12. 국회에 제시했던 동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서, 협회의 주요 입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다 음 □

- 2009. 2. 6. 개정된 공증인법(법률 제 9416호)은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

사의 75세 정년 규정을 도입, 2012. 2. 7.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정년제 규정을 도입함과 동시에 기존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들에게 일괄 시행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정년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종신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해 오던 공증인에 대한 기득권을 침해하는 심대한 규제 사항으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함.

- 또한 현행법을 적용하면 공증인 정년제 시행 후 최초로 2012. 6. 30.자로 퇴직하게 되는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 수는 2011. 8. 10. 현재 기준 총 173명으로 전체 1,546명의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약 11%를 차지하고, 이들 대부분이 임명공증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인 까닭에 오랜 기간 공증업무를 해오던 이들 공증인들이 일시에 퇴직하게 될 경우 소속된 공증사무소의 인가가 취소되고, 각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해 오던 방대한 양의 공증서류 보관 또는 이관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임.
- 공증인 정년제 도입의 입법취지가 고령 공증인이 많아질 경우 공증사무 전반에 걸쳐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를 해소하고, 신규 공증인의 유입에 의한 공증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나, 고령과 신뢰도 및 신규 공증인 임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단지 고령을 이유로 건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면, 공증인 임기 연장(재임명) 등의 경우 현행

법 규정으로도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고려하여 건강진단서 발급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을 충분히 유지했느냐 여부를 검증한 후 임기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정년제 도입 입법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

- 특히 고령의 공증인이 많을 경우 공증인 정원제하에서 젊은 층의 신규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진입이 어렵지 않느냐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이는 변호사겸업공증제도 즉, 인가공증인제도가 있는 현행법상 인가공증인의 구성원으로서 공증담당변호사로의 진출은 그 수의 제한이 없어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고, 임명공증인의 경우도 현행 임명공증인 정원제상의 그 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논란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75세 공증인 정년제 규정은 현행법과 같이 유지하되, 그 시행일에 따른 정년의 단서를 도입, 종전의 규정과 같이 정년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하되, 그 정년을 2014년까지는 85세로 적용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80세를 적용하며, 75세는 2018. 1. 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령별로 순차 적용, 기득권을 일부 보호하면서 공증인 동시 퇴직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이관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공증부책 인증권한 협회장 이관 공증 인법시행령 개정 활동

-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공증부책의 인증권한을 협회장에게 이관시킴으로써 협회와 공증인의 유기적 관계를 증대시키며, 협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관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협회의 유일성, 강제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행사되던 공증부책의 인증권한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국가사무인 공증업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 방식 중 직인의 간인은 천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증인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결과,
- 동 인증을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되, 이를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에게 위탁(이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 공증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 12. 30.(금)자로 관보에 각 공포되어, 2012. 1. 1.부터 일괄 시행중에 있음.
-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예산 수익구조상 각 회원의 일반 연회비 이외에 공증업무 처리 건수에 대비한 차등화된 실적회비 개념을 2013년부터 도입, 협회 수익을 증대할 예정.
- 다음은 협회가 2011. 5. 13. 법무

부에 제시했던 동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제안 이유로서, 협회의 주요 입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다 음 □

- 2010. 2. 7. 시행된 개정 공증인법은 공증인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자율적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로서 “대한공증인협회”를 회원 강제가입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협회 경유제도가 없고, 임명 또는 인가 이후 공증인의 입회는 의무사항이나 입회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으며, 회원단체이면서도 1차적인 자체 회원 징계권한이 없는 등 협회의 역할제고에 어려움이 있는바,
- 현재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공증부책의 인증권한을 협회장에게 이관시킴으로써 협회와 공증인의 유기적 관계를 증대시키며, 협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관리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협회의 유일성, 강제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각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행사되던 공증부책의 인증권한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국가사무인 공증업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 방식 중 직인의 간인은 천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3 집행증서 범위 확대 공증인법 개정 추진 활동

- 우리 협회 요청으로 공증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협회를 비롯, 법원, 검찰, 학계 등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2011. 2. 16. 출범시킨 후 6개월에 걸친 위원회 논의 결과,
-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개선하고, 사서증서에 대한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을 강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 법률문화를 조성하고, 사법기능을 더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2011. 12. 30. 국회에 제출했으며, 동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93페이지 이하 참조).
- 공증제도개선위원회에 우리 협회 측에서는 김진환 수석 부협회장(위원장), 안원모 총무이사, 남상우 법제이사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적극 활동해 왔음.

4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획재정부가 국민 편의성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현물방식 수입인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적 방식의 수입인지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법무부에 의견요청한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과 관련, 협회 측에서는 인지세의 전자납부방안의 도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울러 착오 등으로 인지세납부로 처리된 금액에 관하여 제도적이든 기술적이든 ‘즉시철회’의 방안이나 그 밖의 방안(예를 들어, 현행 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함.
- 다음은 협회가 2011. 9. 26. 법무부에 제시한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 관련 의견으로서, 협회의 주요 입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다 음 □

- 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보험회사와의 4000만 원 이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시켜야 합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 공증인법 제42조).

□ 그런데 공증사무를 처리하다보면 당사자가 서명날인까지 마친 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를 하게 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이미 작성이 사실상 완료된 공증촉탁을 철회(또는 취하)함으로써 부득이 증서작성을 취소함에 따라 인지세 납부도 취소되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적으로 소정액을 결제하고 그에 부여된 바코드의 리딩이나 고유번호의 입력이 이루어진 경우에 더 이상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인지세 납부를 확인하는 기관에서는 매우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한공증인협회는 인지세의 전자납부방안의 도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아울러 착오 등으로 인지세납부로 처리된 금액에 관하여 제도적이든 기술적이든 ‘즉시철회’의 방안이나 그 밖의 방안(예를 들어, 현행 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5 공증인 임명 결격 사유 관련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성년후견제도 도입으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어 공증인의 결격사유에서도 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박은수 국회의원 대표발의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138호)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어 그 용어가 들어간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여도 단순히 그것을 삭제하기만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대신에 성년후견제도상의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을 공증인결격자로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하였음.

○ 다음은 협회가 2011. 12.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한 동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로서, 협회의 주요 입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다 음 □

□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라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므로 공증인의 결격사유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대한공증인협회는 그 규정의 단순한 삭제보다는 공증인임명결격자로 정한 애초 법률규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별개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 공증인은 단순히 전문직 자격사가 아닙니다. 공증인이 처리하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공증인은 직무를 처리하는 한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

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일종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2조 후문). 따라서 공증인의 직무수행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고 공증인은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증인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공증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증인법 제13조, 제15조의4 제2항), 이와 별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그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2조, 제15조의4 제1항). 공증인 임명 이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으며(공증인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제15조의4 제4항), 또한 재임명불가사유로도 정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5조의4 제4항).
- 혹자는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결격자로 정하고 있지 않아도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공증인이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고 지정되어도 면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따로 결격자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초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공증인결격자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피성년후

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증인이 되어 공증을 한다면 그것은 공증의 신뢰에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타인으로부터 후견적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공증인이 되어 공증한다면 누구도 그 공증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공증인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증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애초에 없도록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결격사유임을 공증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증인 자격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공증인과 공증의 신뢰를 높여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인의 결격자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두고 있는 규정은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공증인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을 공증인결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어 그 용어가 들어간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여도 단순히 그것을 삭제하기만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대신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을 공증인결격자로 새로 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만일 이와 같이 개정한다면 그 시행일은 개정민법 시행일에 맞추어 2013. 7. 1.이 되어야 합니다.

임원 등 보선

1 운영위원 보선

서초 법무법인의 2011. 9. 17.자 공증인가 취소에 따른 회원탈퇴로 사임하게 된 박승서 운영위원의 후임으로 법무법인 광장 유경희 변호사(52세 · 사진)를 2011. 3. 28.자로 보궐 선임하였음. 유경희 운영위원은 순천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2회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 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1985년도에 변호사로 개업,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며 2008년도에는 협회 부협회장직을 역임하였음.



2 부협회장 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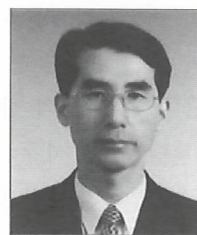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권남혁 부협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후임 부협회장에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국수 변호사(65세 · 사진)를 2011. 6. 7.자로 보궐 선임함. 박국수 부협회장은 부산고, 서



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15회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 · 부산 ·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0년 변호사 개업한 후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활동중임.

3 기획이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2012. 6. 30.자 공증인가 취소에 따른 회원탈퇴로 사임하게 된 이 준 법제이사 후임 상임이사로



로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김건수 변호사(52세 · 사진)를 2011. 8. 8.자로 선임하며, 일부 상임이사의 보직을 변경, 종전 남상우 회원이사의 보직을 법제이사로 변경하고, 신설 기획이사에 임명함. 김건수 신임 기획이사는 성남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22회에 합격, 인천 ·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 · 광주고법 판사, 서울중앙 ·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등을 역임하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현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중임. 신설된 기획이사는 공증직역에 대한 연구 및 협회 정책연구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임.

공증 법령 준수 회원 안내

- 법무부에서는 최근 공증사무의 적정성 제고 및 신뢰회복을 위하여 비대면 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실을 저지르거나, 법인의사록 인증 시 공증인의 기본적인 심사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공증인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감독을 엄정히 실시하고 있는 바,
- 공증제도의 출발점은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는 예방사법으로서 사문서가 아닌 공증인에 의한 공문서 작성이라는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는바, 공증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실업무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공증인의 신뢰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회원사무소에서는 공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증의 신뢰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최근 법무부의 공증인 징계 주요 사례 공문을 전체 회원에게 2011. 6. 10.자로 시행함.

○ 최근 법무부의 공증인 징계 주요 사례

- ① 촉탁(대리)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거나, 작성 증서를 읽어주거나 열람시켜 촉탁(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날인
- ②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 시 촉탁대리인의 서명 및 공증담당변호사 직인 누락
- ③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 서명 말미용지 비치 및 사용
- ④ 대리촉탁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시 3일 이내 본인 통지 의무 불이행
- ⑤ 사서증서에 인증 부여 시 증서와 인증부 사이 간인 누락
- ⑥ 증서번호 공란
- ⑦ 인증서 글자(날짜)를 수정할 수 없음에도 수일이 지난 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⑧ 의사록 사본 무단 반출
- ⑨ 의사록 인증 시 정관 미첨부
- ⑩ 정관상 소집절차 위배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 ⑪ 공정증서 작성 시 직인 누락
- ⑫ 유효기간 경과 인감증명서 사용
- ⑬ 확정일자부 상에 문서명목 기재 및 일자인 날인 누락
- ⑭ 공증담당변호사 신원보증금 미납부 상태로 공증업무 처리
- ⑮ 기타 법령 위반 행위

공증감사 주요 지적사항 안내

- 공증사무는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기능을 하는 중요 국가사무로서, 부실한 공증사무 수행은 효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사무의 신인도 하락 및 법조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바, 공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증의 신뢰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최근 법무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증감사 주요 지적사항 안내 공문을 전체 회원에게 2011. 8. 17.자로 시행함.

○ 법무부 공증감사 주요 지적 사항

- ①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이 촉탁(대리)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인 보조자가 작성한 증서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증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서명한 용지를 이용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공증인법 제38조, 제57조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하며, 공증인이 공증 과정에서 촉탁인을 보았더라도 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공증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②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이 서명하도록 규정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의 용지에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이 미리 서명을 하여 놓거나 백지 용지에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이 미리

서명을 하여 비치·사용하는 행위

- ③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 또는 공증보조자가 증서, 촉탁서, 위임장 등에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는 행위

- ④ 공증사무소 직원을 촉탁대리인으로 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 단골 금융기관, 법무사사무실 등 빈번히 공증 촉탁을 하는 거래처에 공증사무소 직원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증촉탁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송달받아 공증사무소 직원을 촉탁대리인으로 하여 증서를 작성, 교부(우편·인편 송부) 하는 행위

- ⑤ 공증인법 규정 외 보수를 받는 전문 알선자를 통하여 집단사건으로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거나 법무사사무실의 법인의사록 등을 인증해주는 행위

- ⑥ 인감증명서 발행일자에 맞추어 공증촉탁일을 소급하여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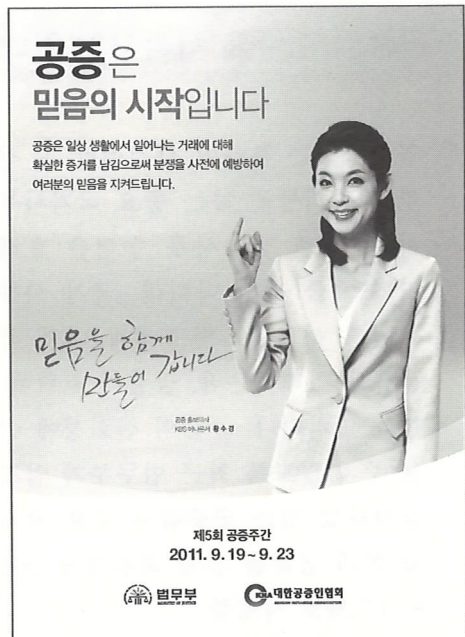
※ 증서원부 상에 장부 폐쇄 표시를 하여 놓지 않고 있다가 전년도 말일자로 소급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등 증서작성일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증서 허위 작성

- ⑦ 공증인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임의 감액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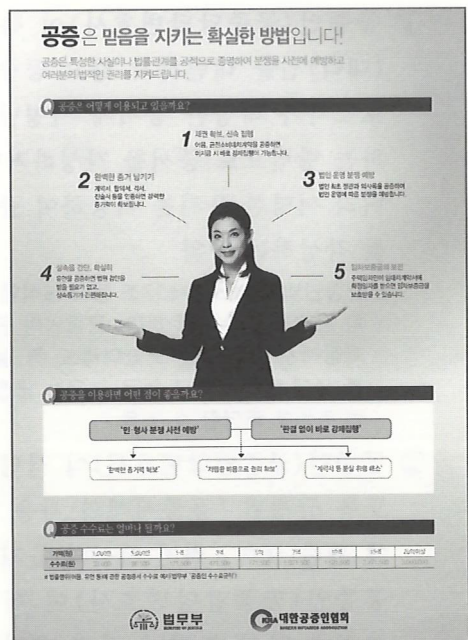
※ 금융기관, 법무사사무실 등 빈번히 공증을 촉탁하는 거래처에 40%~50% 가량 수수료를 할인하여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지속적 거래 관계 유지

제5회 공증주간 개최

- 협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증제도가 사인간 거래시 증거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를 조성하고,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수단임을 적극 알리기 위하여 2011. 9. 19.(월)~23.(금)을 “제5회 공증주간”으로 선정,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였는바,
- 다만 제3회 공증주간 때부터 시행하는 대내외 행사 격년제 간소화 방침에 따라 제5회 공증주간의 경우는 선포식·공증강연·명예공증인행사·언론홍보 등 일체 부대행사를 배제하고, 회원 사무소 및 법원·검찰 등 법조유관기관만을 중심으로 한 공증주간 안내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만으로 축소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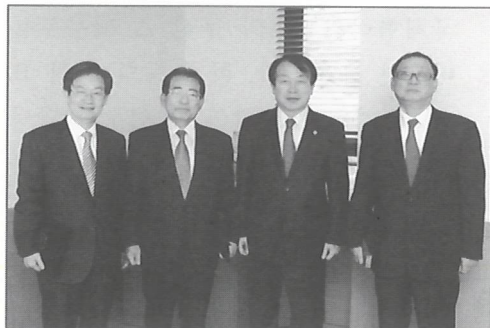


<포스터 겸 리플릿>(앞면)



<리플릿>(뒷면)

유공 공증인 법무부장관 표창



△ 좌측부터 김병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노승행 변호사(법인 두레), 권재진 법무부장관, 지명철 공증인(창원지검) 순.

- 협회에서는 공증업무에 지대한 공헌을 한 노승행 변호사(법무법인 두레, 직전 협회장), 법무법인 광장, 공증인 지명철(창원지검 소속) 회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을 의뢰, 법무부에서는 2011. 11. 4., 동 회원들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및 축하 오찬을 진행함.
- 수상자들은 공증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공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증제도 발전에 기여하여 법률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 등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 신뢰사회와 선진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음.

△ 수상자 주요 공적사항

▲ 노승행 변호사(법무법인 두레)

인가공증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

서 변호사겸업 공증제도 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왔으며,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운영위원, 총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협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증업무 직역확대 및 업무개선 등을 위한 공증인법 등 법률개정에 적극 노력하여 공증제도의 현대화와 선진화에 기여하였음.

▲ 지명철 공증인(창원지방법검찰청 소속)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신속구제를 주요 업무로 하는 공증업무를 약 10년 3개월간 임명 공증인으로 재직해 오면서, 항시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공증업무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처리하여 타 공증인의 모범이 되고 있음.

▲ 법무법인 광장(김병재 변호사 대표 수상)

인가공증인으로서 변호사겸업공증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2009년 대한공증인협회의 국제공증인협회 회원 가입 심사 당시 법무법인 차원에서 공증실무 견학 및 프리젠테이션 등 적극적인 회무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공증업무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



국제 교류 활동

❶ 국제공증인협회(UIN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제1차 정기회의 참석

- UINL 산하 CAAs 제1차 정기회의가 2011. 9. 25.부터 9. 26.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장 폴 드콜 UINL 회장을 비롯한 UNIL 집행부 임원, CAAs 회원국인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김진환 수석부협회장, 안원모 총무이사, 박광빈 국제이사) 및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등 옵서버 국가들이 참석, CAAs 위원장을 비롯한 회장단 구성 문제 및 다른 지역 위원회의 경험, 각 국 공증제도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및 공증지역 확대의 필요성 및 공증인의 윤리 문제 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음.
- 동 회의에서 CAAs 초대 위원장 선출에 대해 중국 측이 내정되었으나,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끝내 공식 표명하지는 아니한 상태임.
- 특기사항은 각 회원국 순번제 위원장직 수행 및 회의 개최국 순환방침에 따라 동 회의를 2010년 일본, 2011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2012년은 중국에서 개최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2013년도에 개최국이 될 예정(단, 위원장 국가는 미정)으로, 동 사안과 관

련하여 협회에서는 △ 국제회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 변호사를 확보하여 (가칭) 국제협력위원회의 구성 △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학계 등의 지원 요청 △ 협회 차원의 국제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직원 확보 등의 사전 업무를 준비하고 있음.

❷ 러시아 극동부 하바롭스크 공증인회 방문



- 러시아 극동부 하바롭스크 공증인회 소속 Brykina Taisiauinl 회장 등 공증인 19명(방문 공증인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 2011. 10. 4. 협회를 방문, 박광빈 국제이사, 김건수 기획이사, 남상우 법제이사, 이봉상 재무이사 등과 함께 양국의 공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환담을 나누었음.

공증부책 인증 업무 이관

- 종전 공증사무소에서 비치·사용하는 증서원부, 인증부 및 확정일자부 등 공증부책은 그 기재전에 각 소속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 인증을 2012. 1. 1.부터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되, 이를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에게 위탁(이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 공증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 30.(금)자로 관보에 각 게재·공포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공증부책 조제 및 인증 업무 처리 지침”을 회원들에게 안내함

□ 공증부책 조제 및 인증 업무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시행령 제20조,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 등에 의거하여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대한공증인협회(이하 ‘협회’라 함) 정회원(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 이하 ‘회원’이라 함)이 사무소 내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되는 증서원부, 인증부, 확정일자부 및 접수부(이하 ‘공증부책’이라 통칭함)에 대하여 대한공증인

협회 협회장에게 조제 및 인증을 신청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증부책 조제 및 매수) 공증부책은 공증서식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회가 지정하는 인쇄소에서 조제하며, 표지 및 연번 연결표시 간지를 제외하고 내지 25매를 기준으로 각 권당 연번 01~99, 00을 기 인쇄하여 100번 단위로 조제한다. 다만,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접수부는 협회가 별도로 정한 매수를 기준으로 연번 인쇄 없이 조제한다.

제3조(인증방법) 증서원부, 인증부 및 확정일자부의 인증은 협회장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천공되는 문자는 “공증”으로 한다.

제4조(신청방법) 회원이 공증부책의 조제 및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증부책을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서식 1에 따라 협회에 신청 접수하여야 한다. 단,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신규로 작성하게 되는 공증부책 조제 및 인증은 당해 연도 10월부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신청을 접수한다.

제5조(신청 권수 제한) 회원은 원활한 공

증부책 조제 및 인증을 위하여 공증부책 별 조제 및 인증 신청서 1회에 각 100권 또는 연번 10,000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한 횟수를 매 신청서에 표기된 신청회차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4조 단서에 따른 다음 연도 공증부책 조제 및 인증 신청 권수 제한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청서 접수)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공증부책의 조제 및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서식 2와 같은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인증 및 발송)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공증부책의 조제 및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 내역 확인과 조제 및 인증을 마친 후 3일 이내에 신청회원에게 협회에 직접 내방하여 수령요청을 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수령확인이 가능한 택배사 등을 이용하여 신청회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송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회원이 착불 형태로 부담한다.

제8조(조제 및 인증수수료) 공증부책의 조제 및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 회칙에 따라 회원들의 실적회비로 징수하며, 그 수수료는 협회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로써 정한다.

제9조(수수료 납입확인서) 협회가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신청회원에게 별지 서식 3과 같은 입금표를 발급한다.

제10조(공증부책 작성 전 연번 기재) 회원은 협회로부터 부여받은 인증 공증부책을 작성하기 전에 앞표지 뒤 연번표시 간지에 인증된 연번표시를 확인하고, 각 내지별 기 인쇄된 01~99, 00 인쇄연번 앞에 연번표시 간지와 같은 연번의 앞자리를 기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예컨대 인증 공증부책의 연번표시부가 1~100으로 표기된 경우(연도별 가장 처음 사용하는 부책)

매년 최초 작성하는 공증부책의 경우는 1번부터 시작하므로 맨 마지막 00번 앞에 1만 추가.

※ 예컨대 인증 공증부책의 연번표시부가 2000~2100으로 표기된 경우

기 인쇄된 01~99 인쇄연번 앞에 20을, 그리고 맨 마지막 기 인쇄된 00 앞에 21을 기재하는 형태로 작성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조제된 공증부책에 대한 경과규정) ① 이 지침 전에 기 조제된 공증부책은 제2조에 따라 조제된 공증부책으

로 보고, 제2조에 따른 공증부책 최초 신규 조제 전까지는 종전과 같은 방식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 인증을 부여한다.

② 기 조제된 공증부책을 보유한 회원이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부책의 연번을 직접 기재한 후 별지 서식과 함께 공증부책을 협회로 직접 내방 또는 등기우편, 수령확인이 가능한 택배사 등을 이용하여 신청 접수하여야 한다.

③ 기 조제된 공증부책의 인증 신청 부수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신청시 각 공증부책 종류별로 5권을 초

과할 수 없다.

④ 기 조제된 공증부책의 조제 및 인증 수수료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증부책 종류 구분 없이 1권당 7,000원으로 한다.

※ 특기사항

기 조제된 공증부책의 수량 소진을 위하여 부칙 제2조에 따라 기 조제된 공증부책에 대한 우선 인증을 시행하며, 지침 제2조, 제3조 단서,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신규 공증부책에 대한 제반 인증업무는 협회에서 그 시기를 별도 통보 예정

[별지 서식 1]

공증부책 조제 및 인증 신청서																									
신청인	명칭		대표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회차	20	년도 회차																				
위 신청인(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20조,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서원부, 인증부, 확정일자부 및 접수부 등에 대하여 조제 및 인증 등을 신청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증 부 책</th> <th style="text-align: center;">권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매수(권)</th> <th style="text-align: center;">신청 일련번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증 서 원 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 증 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확정일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접 수 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없음</td> </tr> </tbody> </table> 20 . . . 신청인 (인)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귀하						공 증 부 책	권 수	매수(권)	신청 일련번호	증 서 원 부	권	매	~	인 증 부	권	매	~	확정일자부	권	매	~	접 수 부	권	매	해당 없음
공 증 부 책	권 수	매수(권)	신청 일련번호																						
증 서 원 부	권	매	~																						
인 증 부	권	매	~																						
확정일자부	권	매	~																						
접 수 부	권	매	해당 없음																						
접수일자		접수번호		인증일자																					
발송일자		담당자 확인		등기(택배)번호																					

[별지 서식 2]

20 년도 공증부채 조제 및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신청 회차	공증부채 신청 권수					인증 일자	발송 일자	비고
				증서 원부	인증부	확정 일자부	접수부	총 권수			

[별지 서식 3]

No. _____

입 금 표

귀하

금		원정		
부채의 종류	수량	단가	금액	
증 서 원 부				
인 증 부				
접 수 부				
확정일자부				
합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대한공증인협회				사무국장
				취급자

2011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2011. 1. 1. ~ 12. 31.)

○ 2011. 1. 13. :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추천

▶ 김진환 수석부협회장, 안원모 총무이사, 남상우 법제이사

○ 2011. 1. 21. : 일본공증인연합회 측의 UINL 산하 CAAs 위원장 순번제 도입 제안에 대한 회신

○ 2011. 2. 14. :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선(법무법인 광장 유경희 변호사) 후보자 추천 ② UINL 연회비 납부 및 UINL 2011년도 정기 회의 참석 관련 논의 ③ 2010년도 회계 결산(안) 및 2011년도 연회비 인상, 2011년도 예산(안) 논의 ④ 2011년도 사업계획(안) 논의 ⑤ 2011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 2011. 2. 22. : 제1차 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1년도 대한공증인협회 사업계획 승인 ②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선 후보자 동의 ③ 공증인윤리강령(안) 제정 의결 ④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⑤ 2011년도 입회비 및 연회비 인상(안) 승인 ⑥ 2011년도 일

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승인 ⑦ 2011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승인 ⑧ 제5회 공증주간 시행 검토

○ 2011. 3. 7. :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인천지방법원 사실조회서 검토 ② 후견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논의 ③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의안 중 회계 예산(안) 재논의 ④ 공증사무소(통합) 서류 보관(인계인수) 문제 논의 ⑤ 연회비 미납 회원 사무소에 대한 검토 ⑥ 원로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한 협회의 감사 인사 방안 검토

○ 2011. 3. 7.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보고사항 외 의결사항 없음

○ 2011. 3. 22. : 사실조회 회신(인천지방법원)

○ 2011. 3. 28. : 2011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② 전차 의사록 승인 ③ 의사록 서명회원 지명 및 승인 ④ 운영위원 보궐 선출(법무법인 광장 유경희 변호사) ⑤ 공증인 윤리강령 제정 ⑥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⑦ 2011년도 회원 입회비 및 연회비 인상 ⑧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

(안) 승인

○ 2011. 3. 30. : UINL 연회비 중 1/2 금액
선납 양해 협조요청(UINL)

○ 2011. 4. 4. :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부협회장 보선
및 운영위원회 개최 ② 공증과신뢰
발간부수, 배포처 및 집필수당 논의
③ 법조원로특별위원회 및 강신영 회
원 건의서 관련 논의 ④ 과년도 연회
비 미납 회원 사무소에 대한 서한 내
용 검토 ⑤ 공증실무 개정판 집필방
향 및 필진 선정 ⑥ UINL 산하 CAAs
위원장 관련 일본공증인연합회 측 서
한에 대한 회신 검토 ⑦ 부실한 혼인
신고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 건의 검토 ⑧ 인감도장 대체 본
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관련 논의 ⑨
회원 미가입 공증사무소에 대한 논의

○ 2011. 4. 20. : 공증과신뢰 통권 제4호
기증(납본) 안내

○ 2011. 4. 25. : 회원 미가입 공증사무소
에 대한 협회 회원 입회 안내

○ 2011. 5. 2. :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일반인 진정서
검토 및 회신 논의 ② 공증인 정년 문
제 관련 공증인법 개정 건의 ③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 구축 관련 공증인

법 개정 검토 ④ 공증부채 인증권한
협회장 이관 공증인법시행령 개정 건
의 ⑤ 등기소 업무 시정요청과 관련
된 진정 처리 검토 ⑥ 공증실무 개정
판 집필 방향 및 필진 선정 논의 ⑦ 법
의날 행사 협회 참여 추진 검토

○ 2011. 5. 13. : 공증업무 진정서에 대한
회신(일반인 양○○)

○ 2011. 5. 13. : 공증인 정년제 관련 공증
인법 개정 건의(법무부)

○ 2011. 5. 13. : 공증인 정년에 관한 공증
인법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법조원로특
별위원회)

○ 2011. 5. 13. : 공증부채 인증권한 이관
을 골자로 한 공증인법시행령 개정 건의
(법무부)

○ 2011. 6. 7. : 제2차 이사회 겸 제5차 상
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제도개선
위원회 활동 보고 및 논의 ② 러시아
극동부 하바롭스크 공증인회 방한 및
세미나 요청 논의 ③ 공증실무 개정
판 집필방향 및 필진 선정 ④ 공증업
무 징계 증가에 따른 협회 차원의 회
원 공문 발송 검토

○ 2011. 6. 7. :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부협회장 보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국수 변호사) ②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보고 및 논의
- 2011. 6. 9. : 러시아하바롭스크 공증인 회 방문 요청에 대한 회신
- 2011. 6. 10. : 공증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한 공증의 신뢰 제고 회원 안내
- 2011. 6. 10. : 과년도 미납 연회비 납부 재안내(회비 미납 회원)
- 2011. 6. 14. : UINL 제1차 아시아지역 위원회 참석 관련 회신(중국공증협회)
- 2011. 7. 4. :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 회신 ② UINL 아시아지역위원회 (CAAs) 제1차 정기 회의 참석 논의 ③ 공증인윤리강령 영문판 검토 ④ 법제 이사 후임 관련 논의 ⑤ 공증제도 개선 활동 추진 현황 검토 ⑥ 회비 미납 회원사무소에 대한 처리 방향 논의 ⑦ 회원 미가입 공증사무소에 대한 처리방향 논의 ⑧ 제5회 공증주간 시행 검토
- 2011. 7. 11. : 공증업무 질의 회신(공증 인가 대전합동, 공증인 서철모)
- 2011. 7. 11. : 2011년도 연회비 납부 회원 안내
- 2011. 7. 15. : 회원 미가입 공증사무소에 대한 협회 회원 입회 재안내
- 2011. 7. 28. : 서초동 변호사회관 사무국 임대차계약 연장 요청(서울지방변호사회)
- 2011. 8. 8. :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신임 상임이사 상견례 및 직무분담{신설 기획이사-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김건수 변호사, 종전 남상우 회원이사의 보직을 법제이사로 변경} ② 공증인 정년제 개정 관련 의원입법 구체적 추진방법 등 논의 ③ 공익 공증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 2011. 8. 12. : 러시아하바롭스크 공증인 회 방문 요청에 대한 추가 회신
- 2011. 8. 17. : 법무부 공증감사 주요 지적사항 회원 안내
- 2011. 8. 25. : UINL 아시아지역위원회 내규 및 부위원장 임원 선출 관련 회신(중국공증협회)
- 2011. 8. 31. :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운영위원회 결원에 따른 후임 선출 논의 ② 공증인

정년제 개정 관련 의원입법 추진 ③ 제5회 공증주간 포스터 등 시안 결정 ④ 공증실무 개정판 집필 관련 수당 지급 ⑤ 성년후견인제도 올바른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관련 논의

○ 2011. 9. 16. : 2012년도 공증부채 일괄 제작 · 공급에 신청 회원 안내

○ 2011. 9. 16. : 공증인 정년제 개정 입법 추진 관련 회원 안내

○ 2011. 9. 19.~23. : 제5회 공증주간 시행

○ 2011. 9. 21. : 2011년도 공증업무 유공 표창 대상자 법무부에 추천(법무법인 두레 노승행 공증담당변호사, 지명철 공증인, 법무법인 광장)

○ 2011. 9. 26. :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조희요청에 대한 회신(법무부)

○ 2011. 10. 10. :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협회 기금특별회계 만기도래에 따른 재예치 은행 선정 ② 인천지방법원 사실조회 검토 ③ 회원 공증업무 질의 회신 논의 ④ 공증인 정년제 개정 관련 의원입법 최종안 논의 ⑤ 정부 추진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

○ 2011. 10. 10. :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 회신(법무부)

○ 2011. 10. 10. : 2011년도 UINL 정기총회 (개최지 콜롬비아) 불참 통지

○ 2011. 10. 10. : 공증업무 질의 회신(법무법인 양현)

○ 2011. 10. 26. :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18호)에 대한 의견 회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1. 10. 27. : 공증인 정년 관련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회원 안내

○ 2011. 11. 7. :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운영위원장 사임서 제출 관련 논의 ② 인천지방법원 사실조회 검토 ③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실조회 검토 ④ 공증부채 인증 권한 이관 관련 제반 논의 ⑤ 공증인 정년제 개정 관련 의원입법 추가 논의 ⑥ 법률신문에 게재된 부동산등기원증서 공증제도 도입 반대입장 법무사 투고 글에 대한 검토 ⑦ 번역사무소 등의 인터넷상 공증 문구 표기 논란 검토 ⑧ 공증인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인하 방안 검토

○ 2011. 11. 7. : 공증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법무부)

○ 2011. 11. 28. : UINL 이사회 후보(박광빈 국제이사) 추천 등

○ 2011. 12. 12. : 법무부와 오찬 간담회 개최

▶ 간담회 내용 : ① 국제공증인협회 관련 국제회의 개최시 법무부 차원의 예산 지원 요청 ② 법무부와 공동주최 공증주간 행사시 법무부 차원의 예산 지원 요청

○ 2011. 12. 12. :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연회비 면제 신청에 관한 논의 ② 인천지방법원 사실조회 재검토 ③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실조회 재검토 ④ 공증부책

인증권한 이관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 지침 논의 ⑤ 2012년도 공증과신뢰원고 집필자 검토 ⑥ 직원 채용 논의

○ 2011. 12. 26. : 사실조회 회신(인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1. 12. 26. :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38호)에 대한 의견 회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1. 12. 30. : 공증인 정년 관련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안내

○ 2011. 12. 30. : 공증부책 인증 업무 위탁(이관)에 따른 업무 회원 안내

2011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2011. 1. 1. ~ 12. 31.)

○ 입회 현황 ○

❖ 법무법인 장인

- 인가일 : 2000. 8. 19.
- 대 표 : 고재정 · 안의석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8 장인빌딩 2층 (443-821)
- 전 화 : 031-217-6600
- 팩 스 : 031-217-6601
- 입회일 : 2011. 5. 9.

❖ 법무법인 경북삼일

- 인가일 : 1996. 6. 22.
- 대 표 : 백영기 · 성기섭 변호사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송정동 34-3
2층 (730-912)
- 전 화 : 054-454-8880, 9898
- 팩 스 : 054-455-8272
- 입회일 : 2011. 5. 19.

❖ 공증인 강성범 사무소

- 소속 서울북부지검

- 임명일 : 2011. 6. 1.(임기 5년)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1-3
상아빌딩 5층 (139-942)
- 전 화 : 02-976-4600
- 팩 스 : 02-976-6446

- 입회일 : 2011. 6. 1.

❖ 공증인 김상호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1. 6. 1.(임기 5년)
- 사무소 : 고려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충무로2가 11-1
선샤인빌딩 501호 (100-860)
- 전 화 : 02-752-9400
- 팩 스 : 02-757-8704
- 입회일 : 2011. 6. 1.

❖ 양재환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1. 6. 1.(임기 5년)
- 사무소 : 고려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충무로2가 11-1
선샤인빌딩 501호 (100-860)
- 전 화 : 02-752-9400
- 팩 스 : 02-757-8704
- 입회일 : 2011. 6. 1.

❖ 법무법인 태한

- 인가일 : 2009. 5. 26.
- 대 표 : 김요한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7층 (137-874)
- 전 화 : 02-535-4700
- 팩 스 : 02-557-4980
- 입회일 : 2011. 6. 3.

❖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 소속 서울서부지검

- 임명일 : 2011. 6. 1.(임기 5년)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9
광신빌딩 301호 (120-834)
- 전 화 : 02-333-1733, 595-9898
- 팩 스 : 02-595-9890
- 입회일 : 2011. 6. 13.

❖ 공증인 안동수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1. 6. 1.(임기 5년)
- 사무소 : 안앤리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8
대영빌딩 304호 (137-887)
- 전 화 : 02-598-4411
- 팩 스 : 02-598-4415
- 입회일 : 2011. 6. 14.

❖ 공증인 이원섭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1. 6. 1.(임기 5년)
- 사무소 : 안앤리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8
대영빌딩 304호 (137-887)
- 전 화 : 02-598-4411
- 팩 스 : 02-598-4415
- 입회일 : 2011. 6. 14.

❖ 법무법인 비케이

- 인가일 : 2007. 4. 30.
- 대 표 : 손순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10

남촌빌딩 5층 (137-885)

- 전 화 : 02-525-3090
- 팩 스 : 02-525-3059
- 입회일 : 2011. 9. 1.

❖ 공증인 황재택 사무소

- 소속 수원지검

- 임명일 : 2011. 4. 5.(임기 2012. 6. 30.까지)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신흥빌딩 601호 (461-804)
- 전 화 : 031-755-5756, 556-5225
- 팩 스 : 031-758-2086
- 입회일 : 2011. 10. 4.

❖ 공증인 문형섭 사무소

- 소속 광주지검

- 임명일 : 2011. 11. 24.(임기 5년)
- 사무소 : 광주공증인합동합동사무소
- 소재지 : 광주 동구 궁동 55-2
2층 (501-040)
- 전 화 : 062-222-3500
- 팩 스 : 062-222-3501
- 입회일 : 2012. 1. 5.

❖ 공증인 박광신 사무소

- 소속 청주지검

- 임명일 : 2011. 12. 30.(임기 5년)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의림동 25-2
3층 (390-030)
- 전 화 : 043-647-5500
- 팩 스 : 043-647-6500
- 입회일 : 2012. 1. 9.

○ 회원 탈회 ○
(공증사무소 인가취소)

❖ 우성 법무법인

- 대 표 : 강병국 · 양동석 · 이상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공릉동 661-4
우성빌딩 205호
- 탈회일 : 2011. 2. 8.

❖ 법무법인 거래

- 대 표 : 황봉환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남구 학익2동 251-5
대흥법조빌딩 206호
- 탈회일 : 2011. 2. 10.

❖ 공증인 이재화 사무소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0-3 삼원프라자 308호
- 탈회일 : 2011. 2. 18.

❖ 법무법인 지안

- 대 표 : 이명상 · 정진형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303-22
교보타워 에이동 4층
- 탈회일 : 2011. 2. 24.

❖ 삼성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차상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5
용마빌딩 301호

- 탈회일 : 2011. 3. 4

❖ 중앙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정경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70-5
해남빌딩 315호
- 탈회일 : 2011. 3. 4.

❖ 법무법인 솔로몬

- 대 표 : 강명준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4-74
골든타워 4층
- 탈회일 : 2011. 3. 4.

❖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 대 표 : 황재택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5
신흥빌딩 601호
- 탈회일 : 2011. 4. 11.

❖ 법무법인 으뜸

- 대 표 : 이상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9
광신빌딩 301호
- 탈회일 : 2011. 4. 14.

❖ 법무법인 올림

- 대 표 : 김세중 · 박주일 · 이준연
변호사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신부동 76-1
여흥빌딩 104호, 203호, 501호
- 탈회일 : 2011. 4. 29.

❖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 대 표 : 박태운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70
대일빌딩 407호
- 탈퇴일 : 2011. 5. 6.

❖ 법무법인 네모

- 대 표 : 박승수 · 양재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30
기승개발빌딩 10층
- 탈퇴일 : 2011. 5. 24.

❖ 공증인 김성찬 사무소

- 사무소 : 중앙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2층
- 탈퇴일 : 2011. 5. 24.

❖ 법무법인 백범

- 대 표 : 채희철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남구 학익1동 252-9
중앙법조빌딩 1층
- 탈퇴일 : 2011. 6. 10.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대 표 : 강용현 · 노영보 · 오용석 ·
이재식 · 이정훈 · 이종욱 ·
황의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한국타이어빌딩 7층
- 탈퇴일 : 2011. 6. 30.

❖ 중부종합 법무법인

- 대 표 : 정재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 동관 204
- 탈퇴일 : 2011. 8. 25.

❖ 반도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조규대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08
안석빌딩 3층
- 탈퇴일 : 2011. 9. 26.

❖ 공증인 선우종원 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8
대영빌딩 304호층
- 탈퇴일 : 2011. 9. 29.

❖ 공증인 김상호 사무소

- 사무소 : 고려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충무로2가 11-1
선샤인빌딩 501호
- 탈퇴일 : 2011. 9. 30.

❖ 공증인 양재환 사무소

- 사무소 : 고려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충무로2가 11-1
선샤인빌딩 501호
- 탈퇴일 : 2011. 9. 30.

❖ 법무법인(유한) 정평

- 대 표 : 박연철 · 심재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7층

· 탈퇴일 : 2011. 10. 14.

❖ 법무법인 정민

· 대 표 : 임홍중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3

성도빌딩 7층

· 탈퇴일 : 2011. 11. 7.

❖ 세일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고석운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트레이드타워 404호

· 탈퇴일 : 2011. 11. 15.

❖ 광주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조희채 변호사

· 소재지 : 광주 동구 금남로3가 3-5

카톨릭센타 307호

· 탈퇴일 : 2011. 12. 19.

❖ 경인 법무법인

· 대 표 : 이덕모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남구 학익동 25-12

석목법조빌딩 6층

· 탈퇴일 : 2011. 12. 29.

❖ 신세계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김인덕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2가 95

금성빌딩 201호

· 탈퇴일 : 2011. 12. 30.

❖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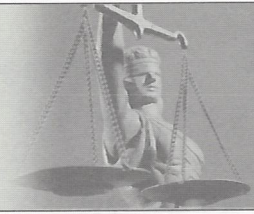
· 대 표 : 박광신 변호사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의림동 25-2 3층

· 탈퇴일 : 2011. 12. 30.

공증인 윤리 강령

대한공증인협회 2011. 3. 28. 제정 · 시행



우리 공증인은 공증인의 사명이 국민 사이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다짐한다.

제1조 (신의성실의무) 공증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2조 (품위유지의무) 공증인은 품위를 유지하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며,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고 존경받도록 노력한다.

제3조 (법령준수의무) 공증인은 각종 법령이나 기타 공증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 공증인은 공증사무에 정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위반한 증서의 작성이나 인증을 하지 않도록 법령의 내용이나 그 변경에 관하여도 관심을 갖고 이를 익히는데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공증인은 생활 속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

방하며, 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법의 정신을 반영한 각종 문례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제6조 (촉탁인수의무) 공증인은 법령에 따라 공증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촉탁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사건처리순서) 공증인은 수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공증인과 촉탁인 사이의 친소관계에 따라 촉탁인을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촉탁 순서에 따라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설명 및 조언)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올바른 법률판단에 의거하여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여야 하고, 촉탁취지에 맞는 공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정한 사무처리) 공증인은 촉탁 당

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공증사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법령위반 등의 공증 금지)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 행위 또는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사서증서를 인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비밀준수의무) 공증인은 법령에 따라 정하는 경우나 촉탁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공증인은 보조자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동시에 그 직무행위에 관하여 충분한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자가 공증인을 보조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의 증감금지) 공증인은 공증 인수수수료규칙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증액 또는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직무 등의 성실한 인계·인수) 공증인은 법령에 따라 서류의 인계·인수를 비롯하여 직무에 관하여 인계·인수하도록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참여와 협력) 공증인은 대한공증인 협회를 통하여 공증인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회비납부의무)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칙 준수 등의 의무)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증사무에 관하여 대한공증인협회의 권고나 지시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사하는 경우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윤리강령은 2011. 3. 28. 부터 시행한다.

공증과신회 (2012 통권 제5호)

발행일	2012년 3월 26일
발행인	송정호
편집인	안원모
발행처	대한공증인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8-1 변호사회관 403호, 404호 전화 : (02)3477-5007 팩스 : (02)3476-5551 전자우편 : koreanotary@naver.com
디자인	디자인 수
편집	전화 : (031)608-9981~2 팩스 : (031)608-9980 전자우편 : design-soo@hanmail.net

Notary and Public Faith (Vol. 5 2012)

Published	Mar 26. 2012
Publisher	SONG, Jeong-Ho
Editor	AHN, Won-Mo
Published by	Korean Notaries Association
Address	#403~404, 1718-1, Seocho3-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77-5007 Fax. +82-2-3476-5551 E-mail. koreanotary@naver.com